

(2026. 3. 19.) 2026 국가신약개발사업 R&D 워크숍



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관리 및 운영 방향

발표자 | 과제운영팀장 박종혜
국가신약개발사업단/R&D본부

**KOREA DRUG
DEVELOPMENT FUND**

YOUR GATEWAY FOR INNOVATIVE DRUG
CANDIDATES IN SOUTH KOREA

목 차



- I*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
- II**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추진 절차
- III**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
- IV**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
- V**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운영 방향

I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



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

국가연구개발혁신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**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**을 목적으로 한다.

혁신법의 구성 및 구조

- (혁신법의 구조) : 혁신법 5개 장 41개 조, 혁신법 시행령 5개 장 68개 조, 시행규칙 10개의 행정 규칙(훈령, 고시)
 - (제1장) 총칙 :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, 다른 법률과의 관계
 - (제2장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: 선정·협약·평가,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, 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·활용,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을 규정
 - (제3장)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: 통합정보시스템, 보안, 전문기관, 연구지원, 제도개선 등을 규정
 - (제4장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 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: 연구윤리, 제재처분 및 재검토, 사후관리, 연구전념 등을 규정
 - (제5장) 보칙 및 벌칙 :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, 업무 위탁,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을 규정

➤ **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,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**

2. 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

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(훈령, 고시)

근거		행정규칙명	비고
1	법 제13조	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고시)	★★★★★
2	법 제13조, 제20조	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	★
3	법 제19조	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(고시)	★
4	법 제21조(시행령 제44조)	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(고시)	★
5	법 제24조	연구지원기준(고시)	★
6	시행령 제21조	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(고시)	★
7	시행령 제33조	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(고시)	★★
8	시행령 제61조	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(훈령)	★★★
9	시행령 제64조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(고시)	★★★★★
10	시행령 제65조	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(고시)	★★★★★

II.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 추진 절차



1. 신규과제 선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위한 신규 과제 선정 및 선정평가 절차 추진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

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

예고

공고 및 접수

선정평가

협약협의를 및
협약

연구비 지급 및
연구개시

- 예고(연 1회)
- 매년 12월 중순 차년도 예산 확정 이후 예고

- 사업공고(연 2회)
 - (1차) 전년도 12월
 - (2차) 해당 연도 6월 (KDDF 홈페이지, IRIS 등)

- 접수마감(공고 후 30일)
- 사전검토
- 서면평가, 발표평가, 실사평가
- 투자심의위원회
- 운영위원회
- 선정결과 통보 (KDDF 홈페이지 게시)

- 협약협의를 :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를 통한 협의 진행
- IRIS 전자 협약 체결

- 민간부담금 납부(Ezbaro)
- 입금내역 확인
- 정부지원금 지급 (주관 및 위탁 기관 지급)

2. 협약변경 및 해약



협약의 당사자로서 **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약변경 가능**(담당 PM 사전논의 필수)



협약의 내용 중 **경미한 변경은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것으로 같음**(IRIS R&D 업무포털 활용)



협약 변경 절차로서 '**상호간 문서를 통한 사전 협의(통보·승인)**' 또는 '**특별평가**'를 통해 변경 가능

협약변경 절차

- (통보사항) 사전논의(담당 PM) → IRIS R&D 업무포털 → (승인통보)협약변경신청
- (승인사항) 사전논의(담당 PM) → **공문접수** → 협약변경심의위원회 심의(약 월 1회) → 승인여부 통보(공문) → IRIS 반영

협약변경 기간

※ 과제종료일 이후 어떠한 사항이라도 협약변경 불가, 반드시 종료일 전까지 확인 필요

- (협약변경 기간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
- (승인사항) 최소 **종료 2달전까지 신청**
- (통보사항) IRIS R&D 업무포털을 통해 과제종료일까지 제출 후 **기관담당자 승인시 반영 가능**

4. 협약의 변경 사항(중요한 vs 경미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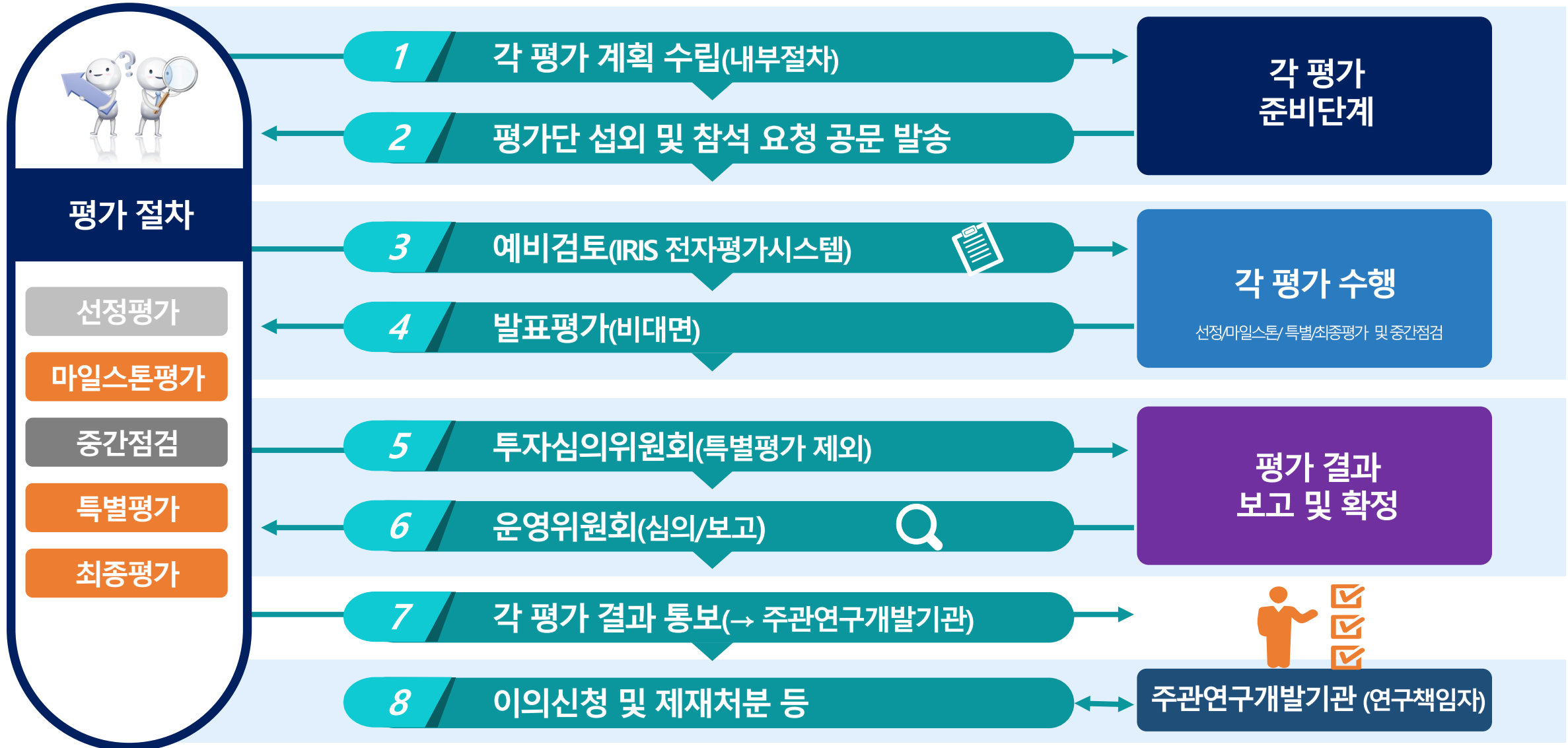
중요한 협약의 변경(실무상 승인사항)

구분	주요 내용
✓ 연구개발기관 변경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
✓ 연구책임자 변경	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
✓ 연구개발 목표 변경	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또는 단계 목표 변경
✓ 연구개발 기간 변경	전체 또는 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
✓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	전체 연구개발기간 또는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
✓ 연도별 연구개발비 변경	정부지원금 또는 기관부담금 변경(현금/현물 포함)
✓ 간접비 총액 증액	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간접비 총액 증가
✓ 영리기관 인건비 변경	인건비 총액 변경 또는 신규 인력 인건비 감액
✓ 연구시설·장비비 변경	3천만원 이상 장비 신규구입·변경구입·구입취소
✓ 연구시설 설치장소 변경	시설 구축 목적 과제의 장비 설치 장소 변경
✓ 연구활동비 변경	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가 또는 품목·수량 변경
✓ 위탁연구개발비 변경	원 계획 대비 20% 이상 증액
✓ 국제공동연구비 변경	국제공동연구비 계획 변경
✓ 연구수당 총액 증액	연구수당 총액 증가
✓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계정 변경	장비 통합관리 적립금 변경
✓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증액	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가

경미한 협약의 변경(실무 상 통보 사항)

구분	주요 내용
✓ 연구 수행방법 변경	연구 추진전략 또는 수행방법 변경
✓ 연구자 변경	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 변경
✓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	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변경 (간접비·연구수당 증액 제외)
✓ 기관 연락정보 변경	기관 연락처, 연구지원 인력 등 행정정보 변경
✓ 협약에서 정한 기타사항	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미한 사항
✓ 단계평가 결과 반영	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 변경
✓ 특별평가 결과 반영	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목표·책임자 변경
✓ 연구수당 감액	연구수당 감소
✓ 간접비 감액	간접비 감소
✓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	연구비 지급 계좌 변경

5. 수행(성과) 평가 및 보고



6. 수행의 보고

① 연차보고서

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제출

구분	주요 내용
✓ 연구개발 추진 실적	해당 연도 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추진 실적
✓ 연구개발 결과	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
✓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	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집행 실적
✓ 연구개발 계획	다음 연도 연구개발 추진 계획 및 목표
✓ 연구개발 환경 변화	연구환경 변화 및 연구개발계획 변경 필요 사항
✓ 연구개발 성과	논문, 특허, 기술이전 등 발생 성과

② 최종보고서

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

구분	주요 내용
✓ 연구개발 개요	연구개발 목적, 필요성, 연구 목표
✓ 연구개발 수행 내용	연구 수행 방법, 추진 과정 및 수행 내용
✓ 연구개발 결과	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최종 연구결과
✓ 연구개발 성과	논문, 특허, 기술이전, 시제품 등 연구개발성과
✓ 연구개발비 집행 결과	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결과
✓ 연구개발 성과활용 계획	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

③ 성과활용보고서

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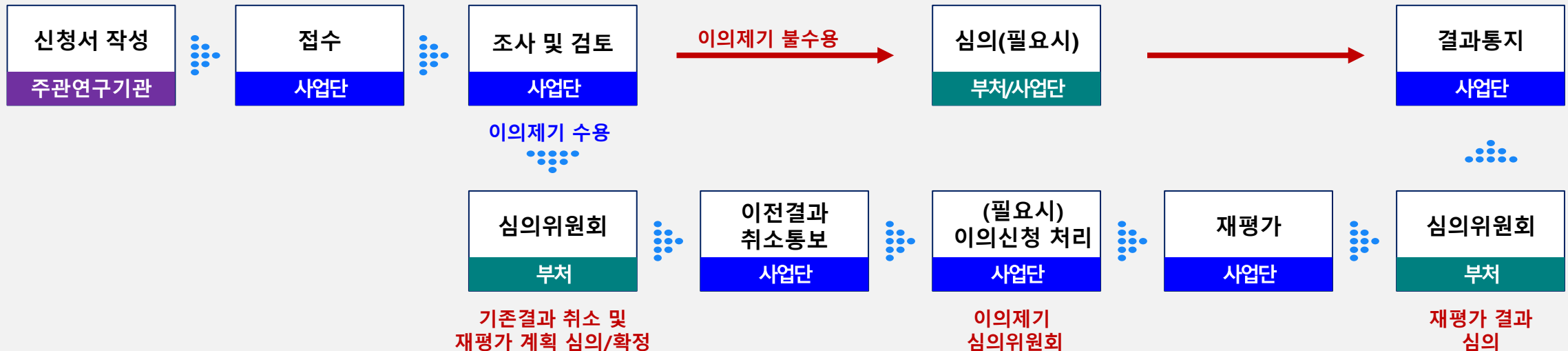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
✓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	기술이전, 사업화, 제품화 등 성과 활용 실적
✓ 경제적 성과	매출 발생, 투자유치,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
✓ 기술적 성과	기술 수준 향상, 추가 연구개발 등 기술적 파급효과
✓ 지식재산 활용	특허 활용, 기술이전 계약 등 지식재산 활용 실적
✓ 추가 연구개발 계획	후속 연구개발 추진 계획
✓ 성과 확산 및 활용 계획	기술 확산, 산업 적용 등 향후 활용 계획

7. 이의신청

❖ 이의신청 범위

- ✓ ①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, ② 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③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, ④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
- ✓ 단, 평가단 · 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, 평가방식(상대 · 절대 · 혼합, 서면 · 토론 · 발표, 블라인드, 평가단계 등)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- ✓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**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**(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 후 결과 통보)

❖ 이의신청 절차(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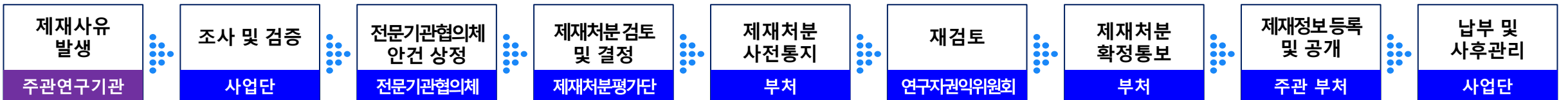


8. 제재처분

✓ 제재처분 목적 및 근거

구분	내용
목적	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및 협약·법령 위반을 제재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
근거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), 시행령 제56조(부정행위), 제59조(제재처분)
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구개발자료·결과의 위조·변조·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(혁신법 제31조, 시행령 제56조) ②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(혁신법 제13조, 제32조)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또는 협약 위반 (혁신법 제11조, 제32조) ④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비 관련 보고 의무 위반·허위보고 (혁신법 제12조, 제13조) ⑤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또는 협약 위반 행위 (혁신법 제32조)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② 연구개발비 환수 ③ 제재부가금 부과 ④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(시행령 제62조)

❖ 제재처분 절차



(참고)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

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이 뭔가요?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
R&D기획	공고	과제접수	과제수행	평가관리	성과관리	문제과제관리	정산관리	기술료관리	징수관리	정보검색	통계	시스템관리	연구노트관리

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이 뭔가요?

IRIS는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던 연구지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R&D사업 과제의 신청, 평가, 관리, 성과등록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.

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연구행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


※ IRIS 업무포털 사용자 매뉴얼 참고

Ⅲ.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



1.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



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-5호, 2026. 1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연구개발기관의 책무)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, 영, 규칙, 이 고시,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,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**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**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법, 영, 규칙, 이 고시에서 정하는 **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**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,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(영리기관 기준)

- 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**현금과 현물로 구성**
- ②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안내된 **기관부담금 납부일까지 납부 완료** 후 정부지원금 지급
- ③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**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** 해야 함
- ④ 복수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**주관기관의 기업 유형에 맞춰 기관부담 비율을 적용**하되 복수의 참여기업간의 매칭 금액은 참여기업간 협의하여 부담

✓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: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, 연구시설/장비비, 기술도입비/연구재료비, 소프트웨어 활용비

2.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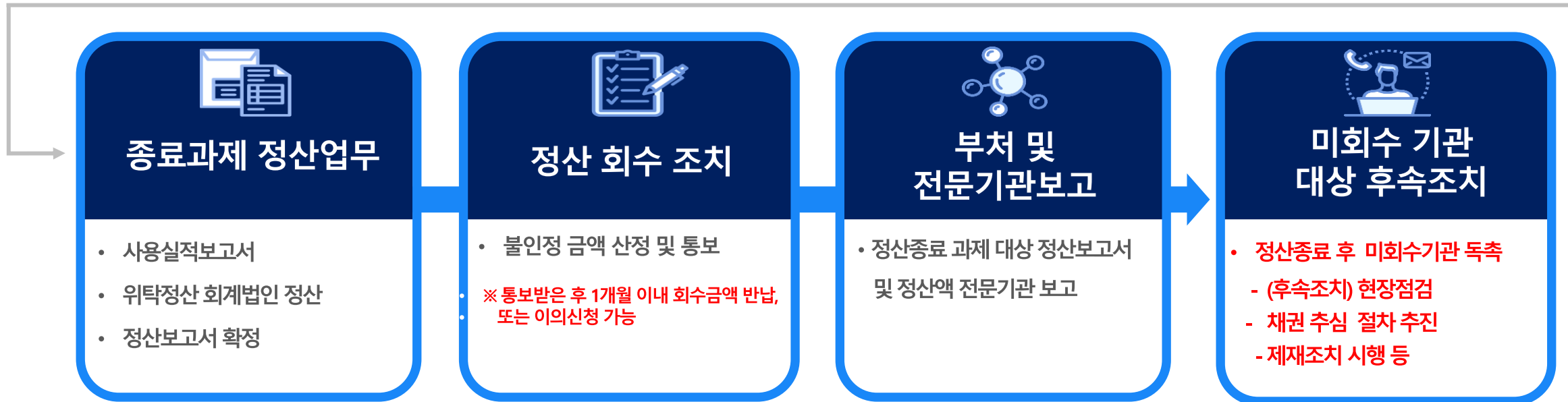


- ① 신규선정과제 및 계속과제는 **정부지원금 지급 이전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 추후 소급 가능**
- ② 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비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**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**
- ③ 연초에는 연구비 지급이 어려움으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**자체재원 지원방안 마련** 해야 함(혁신법 248p)

구분	주요 내용	유의사항
✓ 연구개발비 지급	➢ 협약 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 (연차별·분기별 지급 가능)	★ ★ 연구개시일 이전 연구비 사용 불가
✓ 연구개발비 계상	➢ 연구개발비는 직접비·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	★ 연구계획서에 없는 항목 임의 사용 금지
✓ 연구개발비 관리	➢ 연구개발비는 Ezbro 가상계좌(영리기관), 기관 명의 계좌(비영리기관)로 별도 관리	★ 개인계좌 사용 금지
✓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	➢ 연구개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	★ 목적 외 사용 시 부정사용 판단 가능
✓ 연구개발비 집행	➢ 연구비 사용 시 증빙자료 확보(연구비 집행은 "계좌이체"와 "연구비 카드"가 원칙)	★ 카드·세금계산서 등 증빙 보관 필수
✓ 연구개발비 변경	➢ 연구비 항목 간 변경은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통보	★ ★ 임의 변경 시 정산 불인정 가능
✓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	➢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	★ 보고 지연 시 제재 가능
✓ 연구개발비 정산	➢ 연구개발 종료 후 사용실적 정산	★ ★ ★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가능
✓ 연구개발비 부정사용	➢ 목적 외 사용, 허위 증빙 등	★ ★ ★ 참여제한·환수·제재부가금 가능
✓ 연구개발비 기록 관리	➢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보관	★ 일정 기간 보관 의무

3. 연구개발비 정산

✓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(연구개발비 + 산입된 정부지원금 이자 포함)



4. 불인정 및 부정사용 사례

✓ 연구개발비는 혁신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**사용 용도 및 기준에 맞게 사용** 해야 함

번호	주요 내용 (부정사용·불인정 사례)	관련 근거	조치사항
1	✓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한 물품 구입(사무용품, 개인용 물품 등)	혁신법 제13조,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 해당 금액 불인정 및 회수
2	✓ 허위 증빙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	혁신법 제31조, 제32조	★ 환수 + 참여제한 + 제재부가금
3	✓ 연구계획서에 없는 장비 구입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★ 장비구입비 불인정 및 회수
4	✓ 승인 없이 연구비 항목 간 과도한 변경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★★★ 변경 금액 불인정(회수)
5	✓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인건비 지급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 초과 지급 인건비 환수
6	✓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 인건비 지급	혁신법 제31조	★ 환수 + 참여제한 가능
7	✓ 연구활동비 부적정 사용(회식, 개인식사 등) ※ 허위개최, 허위증빙등 (반복적)부정사용은 제재처분 가능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 해당 금액 불인정(회수)
8	✓ 출장비 기준 초과 지급 또는 허위 출장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 초과금액 환수
9	✓ 연구개발비 개인계좌 사용	시행령 제24조	★ 해당 금액 불인정 및 환수
10	✓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및 이자 미반납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	★★★★ 잔액 및 이자 회수

5. 사후점검 및 현장실사

✓ 국가연구개발사업 R&D 예산 매몰비용 최소화 및 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현금유동성 및 연구비 점검(매년)

추진 목적		근거
R&D 정부출연금 매몰비용 최소화 연구비 집행 적정성 제고 및 컨설팅 제공		[KDDF_국가신약_SOP_PM21] 재무평가 및 사후점검
구분	점검대상	
대상기관 선정기준	① 현금 유동성이 현저히 부실한 기관(과제 선정시 재무평가등급 D, F 등급 부여 기관 포함)	
	② 연구비 집행율이 현저하게 낮은 기관	
	③ 국가연구개발비 이해도가 떨어지거나, 연구비 집행 적정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기관	
	④ 연구비 집행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및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	

➤ 사업단 담당 PM 검토 및 위탁정산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관등을 종합하여 대상 기관 선정 및 점검 수행

(참고) 연구개발비 정산 _ 통합 Ezbaro



연구자 중심의 통합연구비관리의 첫걸음

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.

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



#통합Ezbaro

#통합RCMS

#연구개발비

#연구비카드



통합Ezbaro는 13개 부처(참여기관)의 국가 R&D 예산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

바로가기



통합RCMS는 8개 부처(참여기관)의 국가 R&D 예산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.

바로가기

※ 상세 연구비 정산 방법 : 통합 Ezbaro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. 2025 참고

1 연구비 관리 통합 시스템

- ✓ 사용자 친화적으로 손쉽게
- ✓ 사용자 매뉴얼 제공
- ✓ 통합 콜센터 운영

2 연구비 관리 기준 표준화

- ✓ 비목 및 입력항목 표준화
- ✓ 실적 보고 및 정산 표준화
- ✓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 마련

3 연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

- ✓ 연구비 집행 통합관리
- ✓ 단일정산체계 구축
- ✓ 과제정보관리기능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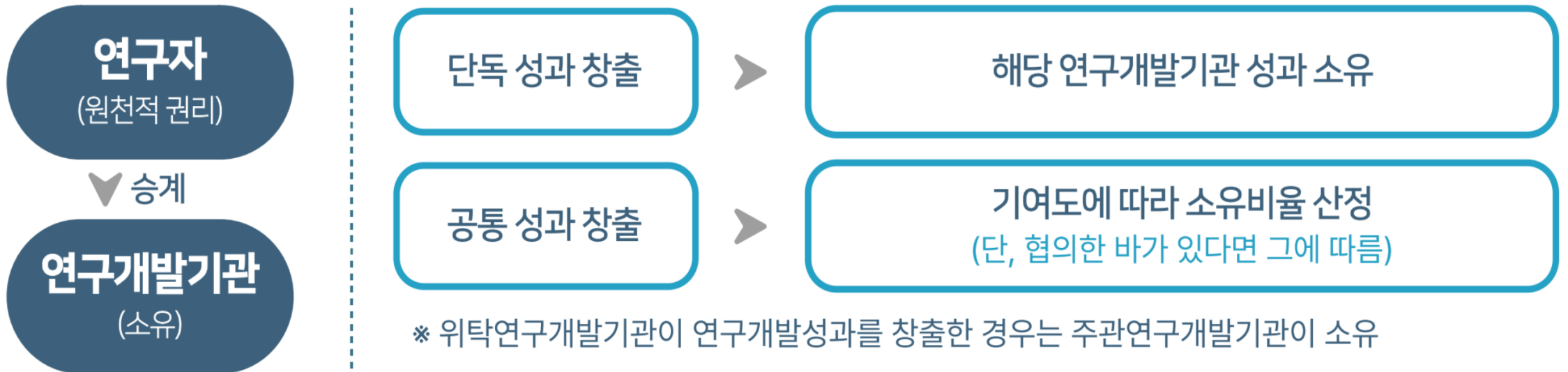
IV.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



1.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

원칙

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
2.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

원칙

- ✓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에 등록·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

구분	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사유	기간	관련 근거
✓ 지식재산	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	1년 6개월 이내	혁신법 시행령 제35조
✓ 국제협력	외국 정부·기관·단체와 협정·조약·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 요청하는 경우		혁신법 시행령 제35조
✓ 영업비밀	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		혁신법 시행령 제35조
✓ 기업보호	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		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
✓ 기술보호	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	3년 이내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✓ 기술보호	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		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
✓ 보안	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		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

-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비공개 승인 요청에 대해 공문으로 접수 필수
-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의 경우 비공개 기간 종료 3개월 이전부터 종료 전일까지 공문으로 접수 필수

3. 연구개발성과 조사 및 관리

과학기술기본법

제12조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)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(이하 "평가등"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「**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**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연구성과평가법

(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)

제1조(목적)

-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**평가결과를 환류**하며 **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**함으로써 **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**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연구개발혁신법

제17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

-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(이하 "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"이라 한다)은 **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**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·관리·공동활용, **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·연계**,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추적조사

구분	주요 내용	관련 근거
✓ 목적	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과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를 파악 하고 성과 활용 촉진 정책 수립에 활용	혁신법 제17조 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
✓ 조사 대상	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	혁신법 시행령 제34조 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
✓ 조사 기간	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	
✓ 조사 내용	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, 기술이전, 사업화, 매출, 고용 창출, 추가 연구개발 등 성과 활용 실적	혁신법 시행령 제37조 (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)
✓ 조사 수행 주체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	
✓ 조사 방법	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	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
✓ 협조 의무	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조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함	

5.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입력

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(IRIS 업무포털 기반)

구분	조사내용	구분	조사내용
① 논문	• 세부성과관리번호		• 정부납부기술료 여부
	• 학술지명		• 납부방식
	• 논문명		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유형
	• ISSN		• 실시방식
	• DOI		• 기술료계약체결일
	• 주저자명(제1저자)		• 기술실시내용
	• 볼륨번호		• 기술실시 대상기관명
	• SCI(E)구분		• 기술실시 대상기관 사업자등록번호
	• 논문페이지		• 세부성과관리번호
	• 세부분과관리번호		• 사업화 형태
② 특허	• 출원(등록)국	④ 사업화	• 기술실시계약 체결여부
	• 출원(등록)구분		• 사업화명
	• 출원(등록)번호		• 사업화내용
	• 발명의 명칭		• 업체명
	• 출원(등록)기관		• 대표자명
	• 출원(등록)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		• 사업자등록번호
	• 출원(등록)일		• 고용창출인원수(명)
	• 세부성과관리번호		• 당해연도 매출액(원)
	• 기술실시 계약명		• 세부성과관리번호
	•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		• 인력양성 대상수
③ 기술료	• 기술실시 대상국가(기술수출)	인력양성	• 세부성과관리번호
	• 당해연도 기술료(원)	연수지원	• 연수대상 인원수

KDDF 성과 지표

마일스톤 달성을(자체 집계)

(1000억 이상) 해외기술실시

(200억 이상) 해외기술실시

국내 기술실시

IND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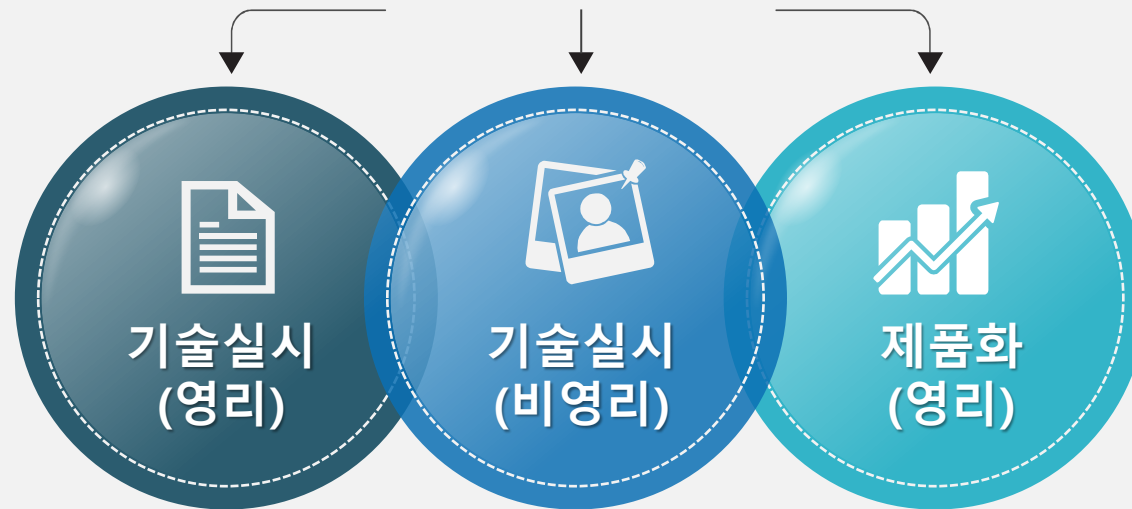
희귀의약품 지정

품목허가(국내/해외)



6. 기술실시 현황 관리 및 기술료 징수

국가신약개발사업 R&D 연구성과 창출



- ✓ **(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)**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**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함**
- ✓ **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, 제32조)** 보고서 미제출,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, 매출액 축소신고,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**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부가금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**

7. 기술실시 제출 서류 안내

✓ 기술실시 성과 발생시 또는 발생 예정인 경우 사업 담당 PM과 **사전 논의 및 보고 필수**

제3자 실시인 경우(영리기업의 경우)	제3자 실시인 경우(비영리기업의 경우)	직접 연구성과 실시인 경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실시 계약 보고 (※ 사전 협의 또는 2주 이내 보고) 가. 기술실시계약보고서 나.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(※ 자체 양식) 다. 과제협약서 사본 ○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(※ 기술료 징수 이후 30일 이내 보고) 가.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○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(※납부고지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) ○ 기술료의 사용 가.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(※ 매년 2월 말까지 제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실시 계약 보고 (※ 사전 협의 또는 2주 이내 보고) 가. 기술실시계약보고서 나.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(※ 자체 양식) 다. 과제협약서 사본 ○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(※ 기술료 징수 이후 30일 이내 보고) 가.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○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서 제외 ○ 기술료의 사용 가.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(※ 매년 2월 말까지 제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실시 결과 보고 (※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 까지) 가. 기술실시결과보고서 나. 과제협약서 사본 ○ 매출액 증빙 자료 (※ 기술료 징수 이후 30일 이내 보고) 가.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○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(※납부고지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)

➢ **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** : 영리기관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 무 발생, 발생시 사업단 문의 필요

V.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운영 방향



1.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지원

체계적인 사업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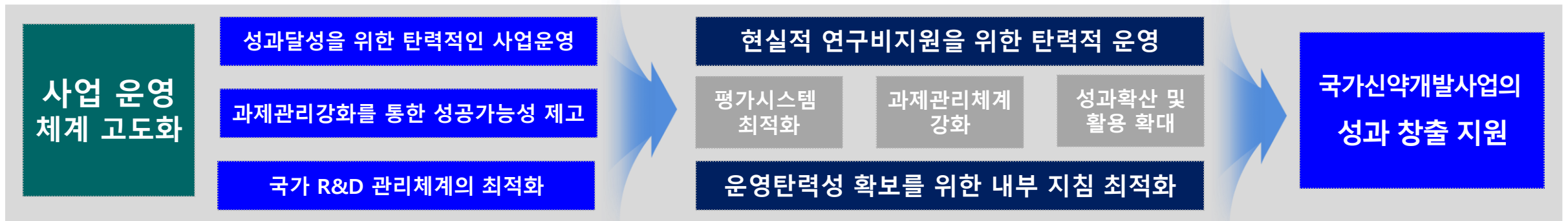
성공적인 과제 관리

업무 효율성 극대화

연구성과 통합 관리



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



DB 관리 및 시스템화

- 행정정보 연계
- IRIS 시스템 연계
- MIS_RnD 오픈

평가위원 확대

전문성 강화

지원사업 등 연계

R&D 지원, CMC 지원

과제기본정보연계

사업화 지원 외

효율적 협약협의

연구비 적정성 검토

사업 운영 및 추진

선순환 구조 확립

2.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

효율적 연구비 집행

1. 효율성과 신뢰성 기반 연구비 관리
2.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명확화
3. 협약 이후 최대한 빠른 기한 내 지급



연구자 행정 편의 지원

1. 행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양
2.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관리 시스템 구축
3. 과제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편의 기능 확대



연구성과 창출 지원

1.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
2. 연구성과 조사 및 분석, KDDF 추진 사업과 연계 지원



애로사항 대응 지원

1. 연구개발기관(연구책임자) 문의사항 응대
2.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부처 전달 등



**KOREA DRUG
DEVELOPMENT FUND**

YOUR GATEWAY FOR INNOVATIVE DRUG
CANDIDATES IN SOUTH KOREA

감사합니다.

문의사항 : kddf_pm@kddf.org